

정서저해 식품 Q&A

Q1 정서저해 식품은 모든 식품이 대상인가요?

- 정서저해 식품은 **사행심을 조장하거나 성적 호기심 및 혐오감 유발** 등 어린이의 건전한 정서를 해할 우려가 있는 식품 또는 그러한 도안문구가 있는 어린이 기호식품 범위의 식품에 한하여 적용합니다.

Q2 어린이 정서저해 식품 판매 금지는 학교 주변 식품안전보호구역 내의 판매업소에만 적용되나요?

- 정서저해 식품 판매 금지는 학교 주변 식품안전보호구역 내 **판매업자에 한정하지 않습니다**. 식품을 판매하는 모든 판매업자는 정서저해 식품을 판매하여서는 안됩니다.

Q3 눈알모양 젤리는 정서저해 식품에 해당하나요?

- 「정서저해 식품 등의 판매 등 금지에 관한 규정」(식약처 고시)에서는 **사람의 특정부위 모양으로 혐오감을 유발하는 식품**을 정서저해 식품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사람의 특정 부위인 눈알모양 젤리는 혐오감을 줄 수 있어 정서저해 식품에 해당됩니다.

Q4 해외직구 등을 통해 어린이 정서저해 식품을 구입하여 판매할 수 있나요?

- 눈알모양 젤리 등 어린이 정서저해 식품에 해당되면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특별법」 제9조에 따라 판매가 금지됩니다. 또한, 식품위생법 제4조에 따라 누구든지 무신고 수입식품이나 헌품 포장지에 ‘한글 표시사항(스티커 등)’이 없는 식품을 판매하여서는 안됩니다.



건전한 어린이 식생활,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함께합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식품의약품안전처 식생활영양안전정책과
T. 043.719.2282/2263



잠깐! 어린이 정서를
저해하는 식품은
판매하면 안돼요



식품의약품안전처

1 어린이의 정서를 저해하는 식품은 판매를 금지하고 있어요



어린이 기호식품(어린이들이 선호하거나 자주 먹는 음식물) 중 어린이의 **건전한 정서를 해할 우려가 있는 식품** 또는 그러한 **도안이나 문구가 있는 식품**은 판매나 **판매 목적으로 제조·가공·수입·조리·저장·운반 및 진열을 금지**하고 있음

※ 관련: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특별법」 제9조 (정서저해 식품 등의 판매금지 등) 및 정서저해 식품 등의 판매 등 금지에 관한 규정 (식약처 고시)

어린이 기호식품의 범위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 제2조 (어린이기호식품)

- 과자류 중 과자(한과류 제외) 및 캔디류
- 빵류
- 초콜릿류
- 빙과류 중 빙과/아이스크림류
- 유가공품 중 가공유류/발효유류 (발효버터유 및 발효유분말 제외)
- 어육가공품 중 어육소시지
- 음료 중 과·채주스/과·채음료/탄산음료 유산균음료/혼합음료 (단, 주로 성인이 마시는 음료임을 제품에 표시·광고하는 탄산음료, 혼합음료 제외)
- 면류(용기면만 해당)
- 즉석섭취식품 중 김밥/햄버거/샌드위치



정서저해 식품의 예시

1

돈·화투·담배 또는 술병 형태로 만든 식품 또는 그러한 도안(술병의 경우, 특정 주류업체 상표나 제품명 유사한 것)을 용기·포장에 사용하여 만든 식품



2

인체 특정부위 모양으로 성적호기심을 유발하는 식품 (남녀의 애정행위 모양 포함)



3

게임기 등을 이용하여 판매하는 식품



4

사람 형태(골격 포함)나 특정부위 모양(머리, 팔, 다리 등)으로 혐오감을 유발하는 식품



2 정서저해 식품을 판매하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어요



어린이 정서저해 식품을 판매한 경우 또는 판매의 목적으로 제조·가공·수입·조리·저장·운반 및 진열한 경우에는 **과태료 500만원 부과**

3 정서저해 식품은 이렇게 관리되고 있어요



어린이 기호식품 판매업소를 대상으로 정서저해 식품 판매 여부 지도·점검

-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내 전담관리원 지정·배치하여 상시 지도·점검(월1회)
- 봄·가을 학기, 여름·겨울방학 등 대비하여 집중 지도·점검(연3~5회)



정서저해 식품 판매여부 온라인 모니터링 실시

- 구매 대행, 해외 직구 사이트 등에 대해 접속차단 조치(상시)

정서저해 규정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www.mfds.go.kr)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 식약처 홈페이지 > 법령/자료 > 법, 시행령, 시행규칙
- 정서저해 식품 등의 판매 등 금지에 관한 규정(식약처 고시)**
 - 식약처 홈페이지 > 법령/자료 > 고시훈령예규



정서저해 식품 판매 위반 사실을 확인하신 경우에는 국번 없이 1399로 신고하세요!